

# 1. 농기계보험

## 가. 순보험료

### 1) 대인배상(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액 종 류	1 인 당			
	사망 1천만원 부상 6백만원 장해 1천만원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3천만원	사망 6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6천만원	사망 무한 부상 무한 장해 무한
동력경운기	8,300	12,500	15,300	30,100
농용트랙터	9,200	14,000	17,200	33,600
콤바인	1,400	2,200	2,700	5,400

### 2) 대물배상(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액 종 류	1 사 고 당			
	2백만원	5백만원	2천만원	5천만원
동력경운기	15,600	17,700	18,300	20,700
농용트랙터	18,000	20,500	21,300	23,900
콤바인	1,700	1,900	2,000	2,200

### 3) 자기신체사고(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액 종 류	보험가입금				
	1사고당 1억원 사망 1천만원 부상 6백만원 장해 1천만원	1사고당 1억5천만원 사망 1천5백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천5백만원	1사고당 3억원 사망 3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3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사망 5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사망 1억원 부상 1천5백만원 장해 1억원
동력경운기	12,000	15,600	22,600	30,800	57,300
농용트랙터	9,800	12,600	18,500	25,100	46,600
콤바인	4,200	5,500	8,000	10,900	20,400

4) 농기계손해(자가용)

가) 새농기계요율

(보험기간 : 1년)

자기부담금 종 류	2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동력경운기	보험가입 금액의 0.39%	보험가입 금액의 0.38%	보험가입 금액의 0.37%	-	-	-
농용트랙터	0.39%	0.35%	0.34%	0.31%	0.29%	0.25%
콤바인	0.04%	0.04%	0.04%	0.03%	0.03%	0.03%

- (주) ① 새농기계라 함은 농기계 출고년도가 보험책임 시작년도와 같거나 또는 그 전년도인 농기계를 말한다.  
 ② 보험가입금액은 새농기계가격에 농기계의 표준감가상각잔존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나) 중고농기계요율

년 식	차 종	승용 / 승합차
2년 전		새차요율의 120%
3년 전		새차요율의 150%
4년 전		새차요율의 170%
5년 전		새차요율의 200%
6년 전		새차요율의 200%
7년전 이상		새차요율의 250%

다) 일부보험요율

$$\text{새농기계요율 또는 중고농기계요율} \times \left(1 + \frac{\text{보험가액}}{\text{보험가입금액}}\right) \times \frac{1}{2}$$

(주) 일부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액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특약순보험료**

1) 대인배상 사망 및 후유장해 한정담보특약(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금액 종류	보험가입	1인당			
		사망·장해 1천만원	사망·장해 3천만원	사망·장해 6천만원	사망·장해 무한
동력경운기		1,300	3,700	6,700	15,800
농용트랙터		1,600	4,200	7,600	17,600
콤바인		-	-	900	2,200

2) 자기신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한정담보특약(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금액 종류	보험가입금	1사고당 1억원 사망·장해 1천만원	1사고당1억5천만 원 사망·장해 1천5백만원	1사고당 3억원 사망·장해 3천만원	1사고당 5억원 사망·장해 5천만원	1사고당 10억원 사망·장해 1억원
	동력경운기		2,000	3,000	10,000	18,200
농용트랙터		1,600	2,400	8,100	14,900	36,200
콤바인		-	-	3,400	6,300	15,300

3) 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약(자가용)

(보험기간 : 1년, 단위 : 원)

종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백만원, 연간 1천만원
	자기부담금	
동력경운기		1,600
농용트랙터		1,600

**다. 특약요율**

- 관용농기계에 관한 특약  
담보종목별로 기본보험료의 60%를 적용한다.

라. 특별요율

구 분	적용담보종목	요 율	적 용 대 상
위험물 적재 농기계 요율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해당농기계 기본보 험요율의 100%를 적용한다. 다만, 임시수송의 경우에 는 그때마다 통지 를 받아 단기요율 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농기계로서, “-통칙의 별표 3”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기준에 의한 위험물을 적재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li> <li>“-통칙의 별표 3”에서 정한 위험물 이외에도 발화점, 인화점 및 폭발성 등이 이들 품목 및 수량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위험물을 적재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li> </ul>
전시용농기계 요율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해당 농기계요율의 50%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장등에 진열되어 있는 농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li> </ul>
특수장비등을 한 농기계요율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	해당용도·차종 기본 보험요율의 100%를 적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장비, 특수한 사용방법 등으로 규정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농기계에 대하여 적용한다.</li> </ul>

마. 보험료 분할납입 방법

납입회수	분납보험료	납입월별 분할납입비율												
		1월	2	3	4	5	6월	7	8	9	10	11	12	
2 회 납	일시납보험료의 102.0%	60%					40%							

(주) 보험기간이 1년인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